

# 충남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개정 2014. 10. 28

개정 2019. 9. 1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언론정보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을 본인이 기 수강하였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다만 선택한 과목이 한 교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출제위원은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임강사가 출제할 수도 있다.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⑦ 시험의 결과는 1년간 학과에 보관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60점 이상
2. TOEIC 660점 이상
3. TOEFL(CBT) 196점 이상

4. TOEFL(iBT) 70점 이상
5. TOEFL(PBT) 530점 이상
6. NEW TEPS 309점 이상
7.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8. OPIc IM2 이상
9. IELTS 6.5 이상

10.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① 논문연구계획서(프로포절)를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프로포절 학기와 논문심사학기는 분리한다.

③ 프로포절 심사는 1학기의 경우 5월, 2학기의 경우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④ 프로포절 심사를 위한 심사논문은 심사일 전주 금요일까지 출력본 10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프로포절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⑤ 프로포절은 모든 학과 교수가 참여하는 공개발표로 하며, 심사결과는 통과, 재심사, 탈락 등 세 등급으로 판정한다.

⑥ 박사과정 프로포절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가 주관하여 제5항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⑦ 재심사 대상자는 해당 학기 8월 말, 2월 말까지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아래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논문 접수시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를 인정한다.

③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만 인정한다. 공동저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논문게재 시점의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시행지침의 주저자 및 공동저자의 인정환산율에 의거하여 1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8]

**제8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3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이에 따라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 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본조 개정 2014. 10. 28]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재의 학과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재의 학과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2019.9.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2017년 입학자 포함)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